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1/13

2012.02.01.제정 2013.09.17.개정 2016.03.01.개정 2016.12.01.개정 2018.10.24.개정 2012.05.29.개정 2014.03.01.개정 2016.09.27.개정 2017.09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19.10.01.개정 2019.12.10.개정 2020.03.03.개정 2020.06.19.개정 2020.09.24.개정 2020.09.25.개정 2021.10.21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12.20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(시험), 제42조(추가시험), 제43조(성적), 제44조(성적의 취소)에 의거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평가방법)** ①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<개정 2020.06.19.>

- 1. NCS 평가체제 활용 교과목의 평가기준은 출석성적 20점, 직무수행능력평가 80점으로 한다.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서술형평가, 수행도평가, 교수자평가(현장직무평가단, 논술 형시험 등)를 3회 이상 실시한다. 단, 보완/심화 평가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.
- 2. 역량기반 교과목의 평가기준은 출석성적 20점, 역량평가 80점으로 한다. 역량평가는 서술형평가, 수행도평가, 교수자평가(현장직무평가단, 논술형시험 등)를 3회 이상 실시한다. 단, 보완/심화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.
- 3. 1,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, 평가기준은 출석 성적 20점, 평소성적(과제물 또는 부정기시험) 20점, 시험 60점으로 한다.
- 4.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및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포함되는 교과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서 인가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<개정 2021.10.21.>
- 5. 온라인수업, 방송·통신수업 등 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역량평가,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은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출석평가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(국가 재난 사태, 감염병 확산 우려 등)에는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호 신설 2020.09.24., 개정 2021.10.21.>
- ② 성적평가의 등급별 배점 및 평점은 A학점 40%이내(그 외 학점 분포비율 자율)로 부여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성적 등급별 분포비율 적용을 예외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21.>
  - 1. 실험실습과목 및 실기과목
  - 2. 현장실습. 해외현장학습 과목
  - 3. 계절학기 개설과목
  - 4. 교직과정, 실기교사 관련과목
  - 5.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및 일학습병행제 실시 교과목<개정 2021.10.21.>
  - 6. 장애인학생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한 성적
  - 7. P/F 처리 교과목
  - 8.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(핵심직무로드맵 중심 역량기반 융합 교육과정에 참여)하는 학생에 대한 성적
  - 9. 기타 총장의 허가를 득한 과목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2/13

- ③ 성적평가 시 성적 등급별 분포 비율은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별 전체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한다.<항 신설 2012.05.29.>
- 제3조(출결) ① 출석은 매 시간 마다 점검하며, 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 시간의 3/4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는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.
  - ② 삭제 <2018.10.24.>
  - ③ 출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'출결관리에 관한 내규'를 따른다.<개정 2020.06.19.>

#### 제3조의2(출석점수 산출기준 및 출석부 기재) ① 출석점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6.12.01.>

철석시간수 수업시간수	0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
주당 1시간 (15시간 이상)	20	19	17	15										I	<u>.</u>									
주당 2시간 (30시간 이상)	20	19	18	18	17	17	16	15								I	7							
주당 3시간 (45시간 이상)	20	20	19	19	18	18	17	17	16	16	16	15						I	?					
주당 4시간 (60시간 이상)	20	20	19	19	19	18	18	18	17	17	17	16	16	16	15	15				Ι	र			
주당 5시간 (75시간 이상)	20	20	19	19	19	19	18	18	18	18	17	17	17	17	16	16	16	16	15			F		
주당 6시간 (90시간 이상)	20	20	20	19	19	19	19	18	18	18	18	18	17	17	17	17	16	16	16	16	15	15	15	F

- ②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.
- ③ 출석부는 각 장마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.
- ④ 출결사항 표시는 출석 ○, 결석 /, 지각 X, 조퇴 ⊗ 로 표기한다.<개정 2020.06.19.>
- ⑤ 온라인 수업, 방송·통신수업 등 원격 교육의 출석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산출하며, 출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오프라인 수업의 방법을 준용한다.<항 신설 2018.10.24.>

결석시간수 수업시간수	0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
주당 1시간(15시간 이상)	20	17	13	10	F											
주당 2시간(30시간 이상)	20	19	17	16	14	13	11	10	F							
주당 3시간(45시간 이상)	20	19	18	17	16	15	15	14	13	12	11	10	F			

<본조신설 2013.09.17.>.<시행일 2013.09.01.>

- ⑥ 본교의 출결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'출결관리에 관한 내규'를 따른다. <신설 2020.03.03.>
- **제4조(유고결석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.
  - 1.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
  - 2. 총장이 인정한 행사나 시합 참가 및 각종 시험에 응시한 경우
  - 3.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 부모가 상을 당한 경우(5일) <개정 2019.12.10.>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3/13

- 4.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상을 당한 경우(3일) <개정 2019.07.16., 2019.12.10., 2020.09.01.>
- 5. 본인의 결혼(5일)
- 6.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실습 <개정 2019.10.01.>
- 7.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의 현장실습, 인턴, 국비교육 등을 포함한 조기취업의 경우(해당일수) <호 추가 2016.09.27.>
- 8. 여학생 보건결석(월1일) <호 추가 2016.12.01.>
- 9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상을 당한 경우(1일) <개정 2019.07.16., 2019.12.10.>
- 10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 <호번호 변경 2016.09.27.,2016.12.01.,개정 2019.07.16>
- ② 삭제 <2016.09.27.>
- ③ 제1항에 해당되어 결석한 자는 유고결석계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, 증빙서류와 함께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, 교무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, 유고결석인정서를 교부받아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시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- 1. 학생증(혹은 신분증)을 소지하지 않는 자
- 2. 당해 시간에 지각한 자
- 3. 시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
- 제6조(추가시험) 징병검사, 신병(병·의원 전문의 또는 한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첨부), 상고 및 조기취업(현장실습 등)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해당 교과목 시험 실시 이전에 시험결시원[별지 제2호 서식]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 교수 또는 학과장을 경유,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실시 이전에 시험결시원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7일 이내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결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09.27., 2020.06.19.>

제7조(재시험) <삭제 2019.07.16.>

제8조(성적의 등급 및 평점평균) 학업성적의 실점 수, 등급, 평점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4/13

등 급	성 적	평 점
	0 1	
A+	100 ~ 95	4.50
A	94 ~ 90	4.00
B+	89 ~ 85	3.50
В	84 ~ 80	3.00
C+	79 ~ 75	2.50
С	74 ~ 70	2.00
D+	69 ~ 65	1.50
D	64 ~ 60	1.00
F	59점 이하	0.00
P		불계

제9조(성적평균점) ① 매 학기 성적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교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산출한 후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눈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 점수로 한다.

[수강신청교과목별평점(실점)×교과목별학점수]의 합계 수강신청총학점수 = 학기 평점(실점)평균

② 졸업 종합성적의 산출은 취득과목별 평점에 교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 이수학 점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평점 평균점수로 한다.

[취득과목별평점(실점)×교과목별학점수]의합계 총이수학점수 = 졸업종합평점(실점)평균
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.
- ④ 교·내외 장학금과 관련한 실점평균 산출 시에는 출석점수를 인정받지 못한 과목의 실점은 제외하고 합산하여 처리한다.
- ⑤ 성적(평점평균)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결정한다.
  - 1. 실점평균이 높은 자
  - 2. 수강신청학점 수가 많은 자
- 제10조(성적제출) 매 학기말 성적은 기말고사 종료 후, 정해진 성적입력기간 이내에 학사종합 서비스 및 NCS운영관리시스템, LMS 원격강좌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6.19.>
- 제11조(평가성적공시) 교과목 담당교수는 평가된 성적을 열람기간 시작 전까지 '열람허용'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성적이의신청) 공시(열람)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열람 및 성적이의신청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성적이의가 합당할 경우 담당교수는 성적이의 신청서[별지 제4호 서식]와 성적정정원[별지제3호 서식]을 함께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 성적이의신청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도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5/13

접수받은 성적이의신청서[별지 제4호 서식]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 <조 개정 2020.06.19., 2020.09.01.>

- 제13조(성적정정) ① 성적누락, 기재(전산입력)착오, 성적이의 신청이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 원[별지 제3호 서식]을 성적정정 기간 내에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6.19.>
  - ② 성적정정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된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성적누락, 기재 (전산입력)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[별지 제3호 서식]을 소정기일 내에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 성적정정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은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9.>
- 제14조(수업일수 3/4 이후 휴학자에 대한 성적평가) 해당학기 수업일수 3/4선 이상을 수강후 군입대 휴학, 신병휴학 등을 한 학생의 성적은 중간고사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NCS(적용 · 미적용)기반 교과목과 역량기반 교과목의 경우 미실시 직무능력(역량)평가는 해당학기에 기 실시한 직무능력(역량)평가의 평균점수를 각 평가의 만점점수로 환산하여 대체한다. <개정 2014.03.31., 2017.09.01., 2020.06.19.>
- 제15조(성적평가자료 보존기간) ① 과제물 및 시험지는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만료 후 담당 교수가 교과목 평가 기록표와 함께 교무처로 제출하고 시험지는 교무처에서 10년간 보관한다.<개정 2018.10.24.>
  - ② 출석부는 학과(계열)에서 수합하여 제출하되 교무처에서 5년간 보존한다.<개정 2018.10.24.>
- 제16조(성적의 기록 및 보관) 매 학기 성적처리 결과는 교육정보원의 학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하며, 교무처장은 매학기 개인별 성적일람표를 전산 출력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무처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성적의 취소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.
  - 1.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의 전부
  - 2.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의 취득한 성적
  - 3. 출석 미달과목의 성적(수업일수 3/4 미만 출석, 유고결석은 출석으로 인정) <개정 2019.12.10.>
  - 4. 미등록자의 취득한 성적
  - 5.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
  - 6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

제18조(F학점의 처리) ① 삭제 <2014.03.01.>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6/13

- ② 삭제 <2014.03.01.>
- ③ 삭제 <2014.03.01.>
- 제19조(규정의 준수) 성적제출기간이나 평가성적의 공시기간을 미준수하는 등 성적평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정 미이행 2회 시 '주의' 조치, 3회 시 '경고' 조치, 4회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규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. 단, 미이행 누적기간은 교원의 임용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2.12.20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7/13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8/13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조는 9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 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조는 8월 30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9/13

[별지 제1호 서식]<개정 2016.03.01.,2019.07.16.>

- 1 13 . 11 0							
		겨	지도 교수	직 원	팀 원	과 장	처 장
유 고 결 ′	<u>석 계</u>	재					
	과(계열) 학변	1			성명		
20 년	월 일 ~ 20 년 월	<u> </u>	! ( 일	간)	사유		
				합니다.			
귀하	위 신청인	E	E	0			
	유 고 결 ⁄	과(계열) 학변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상기 사유로 인하여 20 년 위 신청인	가 고 결 석 계 과(계열) 학번   과(계열) 학번   20 년 월 일~20 년 월 일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결석계   20 년 월   위 신청인	가 고 결 석 계 과(계열) 학번   과(계열) 학번 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( 일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결석계를 제출   20 년 월 일   위 신청인	유 고 결 석 계 과(계열) 학번   과(계열) 학반 일 ( 일간)   20 년 월 일~20 년 월 일( 일간)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결석계를 제출합니다.   20 년 월 일 일 열	가 고 결 석 계 과(계열) 학번 지도 고수 직원 팀원   과(계열) 학번 성명   20 년 월 일~20 년 월 일(일간) 사유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결석계를 제출합니다.   20 년 월 일 일   위 신청인 일	유 고 결 석 계 학반 교수 직원 팀원 과장   과(계열) 학반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

		유 고 결 석 인 정 서		
학과/계열		과(계열) 학번	성명	
결석기간		20 년 월 일 ~ 20 년	월 일(일간)	)
결석사유				
월/일	교시	과 목 명	담당교수명	확 인
		부산경상대학교 교 무 처 경	장 (인)	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10/13

[별지 제2호 서식]

1. 인적사항

# 시험결시원

결재일	계	부팀장	부장	부처장	처장

학과/	계열					학번		이름				
2. 결	시사유	:										
3. 결	시 교괴	무										
구분		117	과	목	명		구분	迅	과	목	명	
1							7					
2							8					
3							9					
4							10					
5							11					
6							12					

※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실시 이전에 시험결시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 7일 이내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결시원을 제출

위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결시원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과장: (서명)

위 신청인 : (서명)

부산경상대학교 교무처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11/13

[별지 제2호 서식]

# 시험결시원

결재일	계	부팀장	부장	부처장	처장

1. 인	적사항									
학과/	계열	학번			이					
2. 결시사유 :										
3. 결	시 교과목									
구분	교 과 목 명		구분		迅	과	목	명		
1			7							
2			8							
3			9							
4			10							
5			11							
6			12							
※ 부득	들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실시	이저에	시헌기	크시워을 제	출하지	무하	- 경우	_		

※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실시 이전에 시험결시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사유 종료 7일 이내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결시원을 제출

위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결시원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과장: (서명)

위 신청인: (서명)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12/13

#### 부산경상대학교 교무처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<개정 2016.03.01., 2020.06.19.>

## 성적정정원

결재일	담당자	부팀장	부장	처장
결계 린	D 6/1	(팀원)	(팀장)	AL 9

	학번					학과						
	성명					<u>평</u>	가체제	구분				
	NCS평가체제		7]	제 출 성	] 적			정	정 성	적		
	미활용 교과목명	출석	평소	시 1회	험 2회	계	출석	평소	시 1회	험 2회	계	비고
정정												
사항	NCS평가체제			제 출 성					정 성			
	활용 또는 역량기반 교과목명	출석		수행능력 = 역량편 평가2	<b>평가</b>	계	출석		수행능력 = 역량편 평가2	<b>팅</b> 가	계	비고

정정사유 :

20 학년도 학기에 이수한 위 학생의 성적을 정정(누락분 추가)하고자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교과담당교수

인

인

학 과 장 부산경상대학교 교무처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1-1-14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13/13

[별지 제4호 서식]<신설 2020.06.19.>

# 성적이의신청서

소속학과				학년			반		-		
학번			성명								
이 의 신 청 내 용											
이수구분	د -	교과목명		수강 학년/반		학점		공시성적		담당교수명	
이의신청 사유 :											
20 학년도 학기 상기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 이의를 신청합니다.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
<u>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u>										는 인)	
연락처 :											
E-mail:											
		조치내용 :									
	이의신청 조치결과	조치결과 통보병			상법		3	조치결과 통보일자			
교과목	조시설과										
교 담당 교수		 변경 전 성적				변경 후 성적					
	정정사항		<u> </u>	07				<u> </u>	1 0	) 7	
	소속 학과	:			ぐ	경명 :	(서명 또는 인)				

#### [유의사항]

- 1. 성적이의신청서 접수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성적정정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2. 성적정정기간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.
- 3. 변경된 최종 확정 성적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